

나노·바이오기술연구소 규정

2004. 3. 11 제정

2010. 7. 7 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나노·바이오기술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소속) 연구소는 이화여자대학교 자연과학대학에 둔다.

제 3 조 (사업) 연구소는 나노·바이오 기술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나노·바이오 각 분야의 이론 및 실험적 연구
2. 나노·바이오 분야의 우수한 연구인력의 양성
3. 나노·바이오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연구
4. 정부, 기업체, 기타 외부 연구소와 공동 연구사업 추진
5. 기타 연구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4 조 (소장·부소장) ①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부소장 1인을 둘 수 있다.

②소장과 부소장은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자연과학대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③소장은 자연과학대학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의 업무를 관장하며,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이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 5 조 (조직) ①연구소에 연구1팀, 연구2팀, 연구3팀 및 행정실을 둔다.

②연구1팀은 차세대 의약전달시스템 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연구2팀은 나노·바이오 소재 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④연구3팀은 나노·바이오 특성규명 및 계산 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⑤행정실은 서무 회계와 기타 타 팀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담당한다.

제 6 조 (팀장) ①행정실을 제외한 각 팀에 팀장을 둘 수 있다. 팀장은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제청하여 자연과학대학장이 임명한다.

②각 팀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제 7 조 (연구위원 등) ①연구소에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연구위원은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과 특별계약교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자연과학대학장이 임명한다.

③객원연구위원은 연구 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자연과학대학장이 위촉한다.

④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객원연구위원의 경우에는 연구계획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

제 8 조 (연구원 등) ①연구소에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되, 그 처우는 본교 연구원 규정에 따른다.

③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 중에서 소장이 임면한다.

④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연구를 보조한다.

제 9 조 (행정인력) ①연구소에 두는 행정인력은 소장이 임면한다.

②행정인력의 보수는 연구소의 자체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0.7.7)

제 10 조 (운영위원회) ①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나노·바이오기술연구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자연과학대학장, 소장, 부소장 및 본교 교원 중에서 자연과학대학장이 임명하는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자연과학대학장이 된다.

③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2.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연구소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위원 임명 및 객원연구위원 위촉의 동의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⑤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1 조 (산·학·연 협력위원회) ①연구소의 산·학·연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력위원회는 소장, 부소장 및 본교 교원 중에서 소장이 제청하여 자연과학대학장이 임명하는 4인 이내의 위원과 소장이 제청하여 자연과학대학장이 위촉하는 3인 이내의 객원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협력위원회의 운영세칙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 12 조 (사업 계획 및 보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연과학대학장, 연구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사업 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2.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 운영위원 명단

(개정 2010.7.7)

제 13 조 (경비 및 현금출납) ①연구소의 경비는 본교의 보조금, 정부·기업체 기타 외부의 지원금, 간접비 등으로 충당한다.

②연구소의 현금출납 사무는 재무처 회계과에서 담당한다.

제 14 조 (운영세칙) 연구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소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부 칙(2004. 3. 11 제정)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7. 7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